

시간강사 위촉에 관한 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대신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시간강사의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자격) ① 대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

② 석사학위 소지 이상의 자

③ 대학원(특수 대학원 포함)의 경우, 정규 학사, 석·박사(명예박사 제외)학위 소유자

④ 제1항, 제2항, 및 제3항의 자격에는 미달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총장은 추천사유를 참작하여 위촉할 수 있다.

1. 담당과목의 성질상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구하기 어려울 때

2. 실기강사로서 실험, 실습, 실기과목을 담당할 수 있다고 인정된 자.

제3조(위촉절차) ① 시간강사 위촉은 전공과정의 경우 학과(부)회의를 거쳐 학과(부)장이 추천하여 내신하고, 총장이 이를 위촉한다.

② 신규시간강사 위촉을 위한 추천은 추천자(학과(부)장)가 시간강사추천서(별지 양식)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시간강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17조(근로조건)의 서면명시)규정에 따라 위촉계약서를 작성(일반대학원, 특수대학원 포함)하고 학기단위로 위촉함을 원칙으로 하며, 사정에 따라 해촉하거나 재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.

제4조(강의시간의 제한) 시간강사는 동일인이 주당 12시간을 초과 담당할 수 없다.

제5조(의무) ① 시간강사는 담당교과목에 대한 강의를 성실히 이행하고, 교육자로서 청렴과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.

② 시간강사는 수업계획서 및 성적 입력, 출석부 제출 등 수업관련 사항들을 소정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.

제6조(위촉시기) ① 시간강사는 담당과목이 개강될 1개월 전까지 위촉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개강일로부터 10일전까지 강사 선임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총장이 직권으로 강사를 위촉하거나 개설된 강좌를 폐강 조치할 수 있다.

부 칙

1. 이 규정은 200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이 규정은 2008년 8월 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부 칙

1. 이 개정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 한다.

〈별지서식〉 - 앞면

시 간 강 사 추 천 서

결 재	조 교	학부(과)장	교무처장	총 장

성명	(한자)			생년월일			
본적				주거무지(직위)			
주소				전화번호 ()	HP		
학 력	기 간	학 교	학 과	전 공	학 위		
	-						
	-						
	-						
담 당 과 목	과 목	학 점	시 간	학 과 (부)	학 년	주·야	비 고

위의 사람을 본교 시간강사로 추천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구비서류
1. 이력서

2. 강의경력(재직)증명서

3. 학위증서 사본

4. 최종졸업증명서

5. 주민등록등본

6. 농협중앙회 통장계좌면 사본

7. 담임목사 추천서
- 1부

1부

1부

1부

2부

1부

1부.

200 . . .

학부(과)장 성명 (인)

대신대학교 총장 귀하

〈별지서식〉 -뒷면

	대 학 명	기 간	과 목 명	주당시간	비 고
강 의 경력사항		-			
		-			
		-			
		-			
		-			
		-			
		-			
		-			
		-			
		-			
		-			
		-			
		-			
		-			
		-			
		-			
		-			
		-			
비 고					